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5명(5급 4명, 6급 57명, 7급 304명, 8급 219명, 9급 16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원 중 5급 1명의 직급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2과를 각 신설하고, 서울동부지청과 서울북부지청에 고용센터 각 1개소를 신설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민취업지원과장”을 “국민취업지원과장(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취업지원과장”을 “국민취업지원과장(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보험법」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청	1.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 성동광진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남부지청	1.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1.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성북강북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북부지청	1.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2.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부천시청	1.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2.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의정부지청	1.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2. 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3. 남양주고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4. 동두천고용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5. 양주고용센터	경기도 양주시
고양지청	1. 고양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2. 파주고용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지청	1.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2. 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3. 화성고용센터	경기도 화성시
성남지청	1. 성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2. 경기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
	3. 이천고용센터	경기도 이천시
	4. 하남고용센터	경기도 하남시
안양지청	1.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2. 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3. 의왕고용센터	경기도 의왕시
안산지청	1.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2.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평택지청	1.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2. 오산고용센터	경기도 오산시
	3. 안성고용센터	경기도 안성시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릉지청	1.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2.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태백지청	1.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2.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창원지청	1. 창원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2.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양산지청	1. 김해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2. 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3. 밀양고용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진주지청	1.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2. 하동고용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3. 거창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통영지청	1.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2.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서부지청	1.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2.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3. 칠곡고용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포항지청	1. 포항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2.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지청	1.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2. 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영주지청	1.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2.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전주지청	1. 전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2. 정읍고용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3. 남원고용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지청	1.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2. 김제고용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지청	1.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2. 부안고용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목포지청	1.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2. 해남고용센터	전라남도 해남군
여수지청	1.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2.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3. 광양고용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청주지청	1.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2. 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천안지청	1. 천안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2. 아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주지청	1.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2.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3. 음성고용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1과, 국민취업지원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부산사하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1과, 국민취업지원2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광주광산고용

	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별표 5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사무관 “111”을 “110”으로 한다.

별표 6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을 “25”로 하고, 행정사무관 “131”을 “130”으로 한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1.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2. 제2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3.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29일까지)

총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10

행정주사보 8

4. 제2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1일까지)

총계 5

일반직 계 5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

전산주사 1

5. 제2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1일까지)

총계 745

일반직 계 745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생략)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u>국민취업지원과장</u>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⑤ ~ ⑫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 ③ (생	<u>지원과장(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포함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국민취업지원과장(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포함한다)</u>----- -----.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28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
--	--

략) <u><신 설></u> <u><신 설></u>	과 같음) ④ 고용보험법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7</u>	<u>18</u>	+1
•	•	•	
•	•	•	
행정사무관	<u>111</u>	<u>110</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4</u>	<u>25</u>	+1
•	•	•	
•	•	•	
행정사무관	<u>131</u>	<u>130</u>	-1
•	•	•	
•	•	•	